

사회봉사단운영 규정

□ 제정 : 2012. 6. 29. □ 개정 : 2017. 12. 28.
□ 개정 : 2015. 5. 13. □ 개정 : 2018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육 목표인 국가.사회봉사 정신에 입각하여 조직된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봉사단(이하 “봉사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공헌을 위한 복지증진 및 나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범위) 본교 교·직원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봉사 및 협력기여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.

제3조(사업) “봉사단”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협력 관련 사업의 중장기 계획수립 및 조정
2. 교내·외 사회봉사활동 및 지역사회협력 프로그램의 기획 및 평가
3. 사회봉사에 참여하는 인적자원과 사회봉사활동결과 관리
4.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교·직원 및 학생의 봉사활동 지원
5. 지역사회 기관과의 사회봉사를 위한 공동협력 인프라 구축 및 운영
6. 기타 사회봉사지원 관련 업무

제4조(조직) ① 봉사단 단장은 총장이 위촉 한다.

② 단장은 봉사단을 대표하며, 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단장은 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학과 또는 행정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5조(팀구성) ① 단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재가를 얻어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각 팀은 1인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하며, 팀장은 전임교원 또는 직원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팀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.

제6조(자료요청) 단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학과 및 부서에 결과보고서 등과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4-2-27 사회봉사단운영규정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